

## 동탄복합문화센터 반석아트홀

### 일 반 사 항

이 름	공연장명	동탄복합문화센터 반석아트홀		
주 소	주 소	경기도 화성시 노작로 134 동탄복합문화센터 반석아트홀		
	우편번호	18459		
일 반	등록일	2011년 05월 06일		
	극장형식	프로시니엄		
전 화	무대	031-290-4655		
	조명	031-290-4653		
	음향	031-290-4652		
	하우스	031-290-4641		
인터넷	홈페이지	<a href="http://art.hcf.or.kr/">http://art.hcf.or.kr/</a>		
좌석수	고정좌석	542석		
	장애인석	6석		
주 차	주차대수	351대(장애인 15대 포함), 전기차 충전구역 8대		
	주차요금	1시간 무료(등록 시 3시간 무료) 3시간 이후 10분당 300원(일 최대 15,000원)		
분장실	분장실1	9명	B1F	화장실
	분장실2	9명	B1F	
	연습실	40명	B1F	피아노
사용시간	오전	09:00 ~ 12:00	3시간	
	오후	13:00 ~ 17:00	4시간	
	야간	18:00 ~ 22:00	4시간	

무대 치수		단위 (mm)		
반석아트홀	프로시니엄	14,500×6,900		
	객석	-	510m²	154평
	무대전체	-	400m²	121평
	주무대	14,500×10,800	157m²	47평
너 비	상수 측무대	10,100		
	하수 측무대	5,800		
	무대 전체	30,400		
깊 이	프로시니엄에서 뒷벽	11,700		
	프로시니엄에서 무대앞선	2,000		
	프로시니엄에서 백막	10,800		
	무대 총깊이	13,700		
높 이	객석에서 무대	900		
	무대바닥에서 그리드 하단	17,700		
	그리드 상부 공간	2,300		
	장치봉 상한고	16,000		
	장치봉 하한고	1,200		
무대 바닥				
재 질	나무			
색 상	에스프레소			
소방 규정	화약류 및 화기 사용시 공연장 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			
	무대 장치에 대한 방염처리 및 방염필증 제출, 안전검사 실시			
무대 사용방침	무대작업 시 반드시 공연장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함			
무대 반입구				
위치	동탄복합문화센터 주차장 출입로 오른편			
반입단 높이	980			
반입구 크기	2,870×3,400			
반입구 관리자	공연장 담당자			
반입구 사용방침	반입구에서 흡연 및 음주금지			
	화재예방 및 안전사고 유의 철저			
	안전장구 및 보호장구 착용 후 반입 실시			
	물품 반입과 반출 시 반드시 공연장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함			

## 사용자 준수 사항

### ○ 일반사항

1. 공연장에 반·출입되는 모든 장비와 인원은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2. 대관 시설에 대한 이용시간은 오전(09:00~12:00), 오후(13:00~17:00), 야간(18:00~22:00)이며 세팅, 철수 시간 포함입니다.
3. 대관 시간 이외 시간에는 무대 출입이 불가하며, 사용시간 초과 시 추가 사용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4. 공연장 내에서의 음주, 흡연, 인화물질 및 화기 취급을 금지합니다.
5. 모든 스태프와 출연자는 공연장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현장 안전교육에 참여해야 합니다. (수료증 제출과 별개)
6. 무대와 객석에는 뚜껑 달린 생수를 제외한 음료수, 꽃다발, 풍선 등을 반입할 수 없습니다.
7.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출연자 및 관계자는 무대/객석 간의 이동을 금지합니다.
8. 최초 입실 시 파손된 장비 및 집기류는 발견 즉시 공연장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9. 공연 종료 후 무대 시설 및 분장실은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쓰레기는 완전히 수거하여야 합니다.

### ○ 무대

1. 모든 무대 작업은 공연장 담당자와 협의 후 진행해야 합니다.
2. 무대에서는 맨발이나 발끝이 노출되는 샌들, 슬리퍼 등의 착용을 금지합니다.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무대 작업 중 무대 스태프 이외의 출입을 금지하며, 공연장 담당자 입회 하에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4. 모든 무대 준비 및 철수 작업 중에는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5. 무대에서 위험물, 인화물 등을 사용할 경우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하며 충분한 안전검사를 실시한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무대 준비 또는 작업 종료 후 공연 스태프는 공연장 담당자에게 사용 공간에 대한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7. 공연장 담당자는 안전을 위해 무대 설치물의 보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따라 보완작업을 해야 합니다.

### ○ 객석 / 분장실 / 로비

1. 공연장과 사전 협의되지 않은 이벤트는 진행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2. 화환은 반입 불가하나, 부득이하게 반입 시 다음 공연을 위해 당일 수거해야 합니다.
3. 객석으로 출입하는 관계자는 모두 스태프증을 패용해야 하며, 없을 시 입장 불가합니다.
4. 관객은 정해진 좌석 수 내에서만 관람 가능하며, 계단 및 통로에 앉거나 서서 관람할 수 없습니다.  
※ 관계법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별표7(수용 인원의 산정 방법)
5. 하우스 오픈 후에는 객석과 무대 간의 이동은 금지합니다.
6. 홍보물(포스터, 엑스배너 등)은 정해진 곳에만 위치할 수 있으며, 공연 종료 후 모두 직접 제거해야 합니다.
7. 매표소/분장실/연습실 내 가구 및 집기류는 다른 곳으로의 이동은 불가하며, 사용 후 퇴실 시에 원상복구 해야합니다.
8. 매표소 및 분장실 퇴실 시 반드시 하우스매니저에게 정리 확인을 받아야합니다.
9. 매표소는 공연 시작 1시간 전부터 공연 종료 시까지 담당 스태프(최소 2명)이 상주해야 합니다.
10. 분장실로 일반 관객의 출입은 금합니다.
11. 촬영은 사전 협의된 좌석에서 진행해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촬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